

제283회 임시회
2009. 9. 21(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21(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민경환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9월 1일
- 회부일자 : 2009년 9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 9.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본 조례의 미비점 등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안 제3조 ~ 안 제7조)
-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안 제9조 ~ 안 12조)
- 사회적기업 등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안 제13조, 안 제 14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제출 의무 규정(안 제16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사항 규정(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조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문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경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5
----------	-----

발의연월일 : 2009년 9월 1일

발 의 자 : 민경환·박종갑·박영웅·송은섭·
심홍섭·이영복·이범윤 (7인)

1. 제안 이유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본 조례의 미비점 등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안 제3조 ~ 안 제7조)
- 나.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안 제9조 ~ 안 12조)
- 마. 사회적기업 등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안 제13조, 안 제 14조)
-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제출 의무 규정(안 제16조)
- 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사항 규정(안 제17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 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일정기간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2.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심사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2명 이내의 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노동관서의 사회적기업 업무담당관

2. 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는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7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4. 도와 시·군간 협력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기반 구축
6.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용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

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 한도는 해당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1. 도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망의 구축·운영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치

제15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보고 등) ①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규칙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제16제3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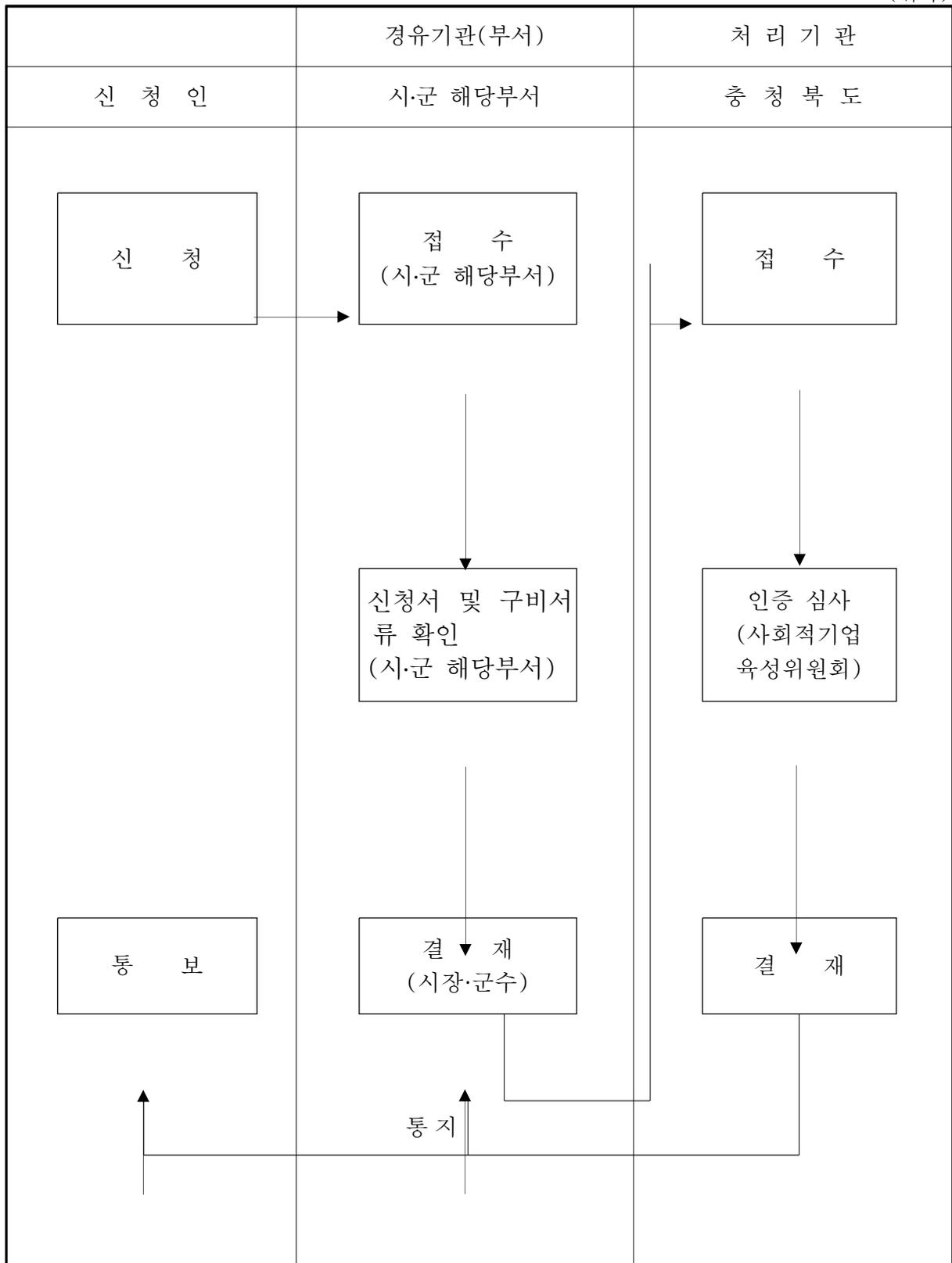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관 계 법 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이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기관·단체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성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